

고시내용

페이지 : 1/1

게재(요청)일자	2015-10-08	담당부서	도시계획과	한상오
고시공고구분	고시	고시공고번호	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-148호	
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				
제목	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			
내용	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4호(2009.02.05.)로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35호(2010.04.15.), 제2011-411호(2011.12.29.), 성북구고시 제2012-66호(2012.05.17.), 제2013-10호(2013.01.17.)로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「우이~신설 도시철도(경량전철) 민간투자사업」 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하고,</p> <p>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지형도면 등의 작성·고시방법)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5년 10월 8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북 구 청 장</p>			